

	<h1>보도자료</h1> <h2>11.19(목) 조간부터 보도 가능</h2>	
--	--	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보험과,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,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, 보험개발원 자동차상품팀				
책임자	[금융위원회] 이동훈 과장 (02-2156-9830)	담당자	[금융위원회] 김선문 사무관 (02-2156-9831)	[국토교통부] 양정선 사무관 (044-201-3840)	[금융감독원] 김일태 팀장 (02-3145-7466)
	[국토교통부] 김희수 과장 (044-201-3835)		[국토교통부] 양정선 사무관 (044-201-3840)	[금융감독원] 김일태 팀장 (02-3145-7466)	[보험개발원] 정태윤 자보상품팀장 (02-368-4277)
	[금융감독원] 진태국 국장 (02-3145-7460)		[보험개발원] 강계욱 상무 (02-368-4004)		
배포일	2015.11.18.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7매	

**제 목 : 고가수리비·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.**

### 「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」 마련·추진

- ▶ (경미사고수리) 경미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및 규범화 추진
  - ▶ (렌트비) 동급차량의 최저요금 수준 지급
  - ▶ (미수선수리비) 실제 수리원칙 도입(自車) 및 이중청구방지시스템 구축
  - ▶ (보험요율)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 신설(自車)
- ⇒ **사회전반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도모**

## I. 검토 배경

-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실생활에서 **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시** 발생하는 **각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**

(i) 고가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 차주의 과실이 적어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함에 따른 불합리성 상존

(ii) 고가차량의 과도한 수리비·렌트비 등이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

\* 고가차와의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2억원 이상 고액 대물배상 가입자 비중이 지속 증가 ('10년 18% → '12년 36% → '14년 56%)

(iii) 자동차보험의 물적(대물담보 + 자기차량담보) 손해 증가로 인한 보험사 영업손익의 지속적인 악화 초래

\* 자동차보험 영업적자(조원) : (11년)△0.5 → (12년)△0.6 → (13년)△0.9 → (14년)△1.1

이에 따라 **고가차량** 관련한 **자동차보험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** 한다는 **사회전반의 공감대**가 형성

○ 지난 10.13일 개최된 「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」 논의를 토대로,

○ 금융위·국토부·금감원·보험개발원은 고가차량 증가에 따른 **자동차보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**

## II. 문제점 및 개선방안

### 1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를 통한 수리비 절감 도모

(현 황) 경미한 사고시에도 피해자 및 정비업체의 과도한 요구\*에 응하면서 **동일 유형의 사고에서도 수리비에 큰 격차 발생**

\* (예) 단순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범퍼손상시에도 새 범퍼로 교체 요구

- 이처럼 충돌사고라기 보다는 주로 접촉사고인 경미한 사고의 경우, 다른 부품의 손상없이 범퍼커버에만 긁힘·찌힘 등에 불과함
- 이에 따라 기술·안전상 판금·도장 수리로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무분별한 부품교체 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금 누수 심화
- \* (예) '08.4~'13.12월 기간중 발생한 사고의 범퍼 교체율 : 70.1%

**□ (개선안) 경미한 사고발생시 범퍼 등 부품교환·수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규범화하여 적용**

-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간 성능·품질 비교시험 및 충돌시험을 거쳐 15년말까지 「경미사고 수리기준」을 마련·확정
- \* 금년말까지는 교체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기준을 우선 마련하고, 시장 정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다른 외장부품(헤드/도어 등)으로 확대 추진
- 「경미사고 수리기준」이 자동차 수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업체 등에 행정지도(공문)하고,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('16년 상반기)

**2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을 통한 렌트비 경감 도모**

**가. 렌트차량 제공방식 개선**

- **(현 황)** 대물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기간중 **피해차량과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**
- 현행 표준약관 지급기준에서 제시된 '동종의 차량'은 **피해차량과 배기량·제조사·차량모델이 동일한 차량**으로 해석
- 특히, 차량이 오래된 외산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 도덕적 해이 및 초과이득 발생
- \* (예) 벤츠 S500 2001년식 사고시 차량가액 약 880만원 VS 렌트비 1,056만원

**□ (개선안) 현행 표준약관상 제공하도록 규정한 '동종의 차량'을 '동급의 차량\*'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**

- \* 동급차량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
- \* (예) BMW 520d 1995CC 사고시 → 유사한 배기량을 가진 차량 제공 가능

**나. 렌트차량 제공기간 개선**

**□ (현 황) 현행 기준상 렌트 인정기간은 수리완료시점(한도: 30일)까지로 하되, 기산점을 별도 명시하지 않아 렌트 인정기간 불명확을 초래**

- \* 수리업체에 입고하지 않은 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등 부당한 수리 지연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

**□ (개선안)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통상의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인정**

- \* 이와 병행하여 통상의 수리기간 산정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보험사 DB를 집적(3년)하여 작업시간별 정비업체별 수리기간의 평균치(범위)를 공유

**3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을 통한 부당한 보험금 누수 억제**

**□ (현 황) 소비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할 경우, 보험사는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**

- 미수선수리비는 소비자 선택권 및 보상의 신속성 제고 측면에서 유용한 방식이나, **허위 견적서 발급을 통한 미수선수리비 과다청구 등 부작용 사례도 다수 발생**
- 또한, 현재 미수선수리비 수령 후 실제로는 수리하지 않고 차후에 다른 사고 발생시 동일사고에 대해 이중청구할 경우,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

- **(개선방안)** 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를 폐지하는 한편,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방지 시스템 구축 추진
  - 자차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**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**(민법(§394)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대물보상은 제외\*)
    - \* 대물과 자차가 혼재되어 있는 쌍방과실사고도 제외
  - 보험개발원에 모든 사고차량\*의 **차량파손 부위 사진 등을 수집**하여 보험사에 제공하는 **이중청구 방지시스템 구축**
    - \* 실제 수리비가 지급된 경우와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만 지급한 경우 모두 수집
  - 보험사는 동 시스템을 통해 기존 미수선수리비 지급내역 및 파손 부위를 확인함으로써, 이중지급을 사전에 방지

#### 4 **고가수리비 특별요율 신설을 통한 운전자간 형평성 제고**

- **(현 황)** 고가차량과 사고시,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가 수리비가 저가 차량에게 전가되어 **보험의 형평성 등에서 불합리하다는 논란 빈발**
  - 그럼에도 현행 보험요율체계는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

<예> 에쿠스(1억원)와 아반테(1천만원)가 충돌하여 각 차량이 모두 전손되는 사고 발생시,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액 결정

과실비율		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		
에쿠스	아반테	에쿠스(㉠)	아반테(㉡)	배수(㉠/㉡)
90%	10%	1,000만원	900만원	1.1배
50%	50%	5,000만원	500만원	10배
10%	90%	9,000만원	100만원	90배

⇒ 아반테 과실이 10%라도 아반테 차주가 배상할 금액(1,000만원)이 에쿠스 차주가 지급할 금액(900만원)보다 큼 → 아반테 차주 보험료 급증

#### □ **(개선안)**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**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신설**

-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“**고가수리비 할증요율**”을 신설하고, **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%를 넘을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**

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 부과(안)

평균수리비 대비 차량별 수리비	120% 미만	120%이상 ~130%미만	130%이상 ~140%미만	140%이상 ~150%미만	150% 이상
보험료(억원)	13,376	3,347	68	88	5,215
고가수리비 특별요율	-	3%	7%	11%	15%
차량분포	국280	국8, 외1	국2	국4, 외1	국8, 외38

\* (예) 국산H사 E리무진 / 외산 B사 7series 등

### Ⅲ. 기대 효과

-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**고가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 전면 개선**
  - 국제적으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통해 현행 고가차량 관련 고비용 구조의 효율화 도모
  - 특히, 고가차량을 이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
- **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**
  -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비용의 보험금 누수가 감소함으로써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 기대
  -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제도 도입으로 고가/일반차량 운전자간 형평성 제고

□ **보험회사의 안정적 자동차보험 공급기반 마련**

-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관련 손실 규모를 줄임으로써 안정적 자동차보험 공급 인프라 구축

**IV. 향후 계획**

- 금융위·국토부·금감원·보험개발원 등은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을 즉시 추진하여 **세부과제별 제도개선을 최대한 신속히 조치**

정책 과제	필요 조치사항	추진 일정	추진기관
<b>1.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</b>			
①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	시험 및 기준마련	'15.4분기	국토부 손보협회
② 경미사고 수리기준 규범화	국토부 행정지도(공문) 및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	'16.2분기	국토부 금감원
<b>2. 고가차 렌트비 경감 도모</b>			
① 대차료 지급기준 변경	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	'16.1분기	금감원
② 렌트기간 개선	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	'16.1분기	금감원
<b>3.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</b>			
① 자차손해 미수선수리비 폐지	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	'16.1분기	금감원
② 이종청구 방지 시스템 구축	시스템 구축	'16.2분기	보험개발원
<b>4. 자동차 보험요율 개선</b>			
① 자차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신설	자동차보험요율 신고서 개정	'16.2분기	보험개발원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<http://www.fsc.go.kr>

